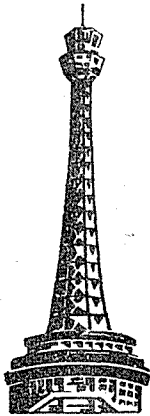


現行工業所有權制度的是非

時 論



工業所最權이라 함은 特許權 實用新案를 意匠權 및 商標權의 네가지 權利의 總稱이다.

이 制度는 새로운 發明을 保護하고 內外國의 새로운 技術을 公開利用케 함으로써 近來의 發展을 促進하는 데 그 義意가 있다.

따라서 世界의 大部分의 近代國家는 이 制度를 갖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舊韓末年(1908年)에 勅令으로 韓國特許令을 公布한바 있다.

그러나 이와같이 오랜 歷史를 가지고 있으면서 現行 特許法에는 各條項에 相치된點이 許多하고 一貫된 法 理論이 貫徹되지 못한 感이 있다.

이는 實用新案法 意匠法成은 商標法에서도 마찬가지로 法의 概念이 明確치 않아 法解釋이 구구하여 實務上에 혼란을 빚어내고 있는 實情이다.

그 理由는 八一五 解放後 實地工業所有權法을 專門의 研究한 사람이 거의 없었고 1864年 美軍政法令으로 制定된 特許法을 五·一六革命前까지 使用함으로써 法體制를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는 데 있다.

보다 더 根本的인 理由로는 그동안 社會的으로 工業所有權에 關心이 희박했고 따라서 爲政者나 行政政府의 指導層에서 工業所有權 制度에 無關心했다는 데 있다.

이러한 實情下에서 五一六革命 後 關係者들이 無限 에는 썼으나 特許法, 實用新案法 意匠法, 商標法의 大幅改正을 法律專門家가 아닌 實務者 몇 사람이 日帝 舊特許法을 基礎로 하여 其間使用하여 온 美軍政法令에 插入하는 式으로 미봉의인 起草를 하였기 때문에 오늘날 法의 概念에 一貫性이 없고 따라서 法解釋上 許多한 異論을 派生할 수 있는 餘地를 만든 것이다.

根本的으로 法制定과정에서 統一性을 결여한 까닭에 法運營上 法秩序가 確立될 수 없음은 當然하겠다.

前述한 바와 같이 特許法 및 其他 關係法令의 未備와 判例의 貧困도 있었거니와 特許 行政의 運營面에서도 實務經驗者의 不足을 列舉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技術職公務員이나(特許法을 理解조차 못하는) 一般行政職을 審査 審判官으로 아무런 資格規定없이 또 아무 研修課程을 밟지 않고 發令하여 審査審判業務를 擔當케 함으로써 工業所有權者에게 本意아니게 被害

權 주는 事例가 있었음은 甚히 유감된 일이 아닐 수 없다.

또한 職制上으로 審査官補制度가 없기 때문에 有能한 審査官 審判官의 養成確保가 不可能하다는 것도 안타까운데 五一六革命 後 每日 한 時間式 關係法에 對한 研修를 하여 自體資質向上을 圖謀했으나 後 人事移動으로 一年以上 研修를 마친 審査, 審判官이 半數도 못남아 있다.

特許局의 審査審判官의 人事移動은 審査 審判官의 全體의 資質을 低下시키는 結果가 된다. 그 理由는 審査審判官은 實際法의 理解보다 經驗法則의 應用이 더 큰 實務上의 效果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이와같이 重大한 審査, 審判官의 資格要件을 考慮하지 않는 特許人事行政은 先進國家에서는 그 類例를 볼 수 없는 奇現象으로서 火急히 是正되어야 할 根本問題가 아닐 수 없다.

특히 特許局이 마치 無能하거나 上官의 눈 에 거슬리면 보내지는 流配處와 같은 認識을 준대서야 될말인가

特許局에서 받은 모든 手數料에 對하여 過去의 概念이 一般 法院에서 받은 手數料와 同一視해 왔다. 그러나 先進國家의 大部分이 實際料金概念으로 움직이고 있다.

實例를 들면 美國을 비롯하여 西獨, 其他의 나라에서는 出願書類의 枚數 或은 請求範圍의 項數等에 依하여 料金を 策定하고 있는 것이다. 또 어떤 國家에서는 公告費用을 別途로 納入시키고 있다. 即 特許出願者가 出願의 審査料를 自己부담으로 한다는 것이 一般의인 觀念이며 特許權者가 自己特許의 事後管理費用으로 特許料를 부담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出願料나 特許料等으로 收入된 歲入은 昨年(71)度에 1億9百萬圓에 達하고 있다.

그러나 歲出은 8千2百萬圓으로 特許制度의 本質로 봐서 自體收入만이라도 確保함으로써 未備한 施設과 業務上 必要한 資料具備에 充當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結論으로 特許局이란 收益機關이 아니고 科學技術의 向上과 國家産業振興을 圖謀하는 機關인 만큼 또 自由友邦國家와 互惠主義原則下에 적지아니 特許去來가 進行되고 있는 이 時點에서 보다 効率的이고 고무적인 法制定과 人事行政이 要望되며 나아가 財政의 뒷받침으로 施設과 資料補完에 英斷있기를 促求하는 바이다. 끝